

1.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8년 2월 28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시민행복교육국장)
- 회부일자 : 2019년 3월 4일
- 상정일자 : 제26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년 3월 19일), 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행복교육국장 김영애)

□ 제안이유

-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 지정·위탁 중인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함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재단 설립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진흥원에서 수행할 사업을 명시하며,

- 진흥원의 정관, 재원조성, 사업의 위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무원 파견,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곽영구)

○ 조례안 개정의 목적은

- ▶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을 별도 법인으로 전환하여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은

- ▶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된 이래, 공교육 외의 학위 취득, 여가 선용, 취미 생활 확대 등의 개념으로 인식되던 평생교육이 최근에 다시 각광받고 있는 것은

평균수명의 연장, 기술의 혁신 등으로 급격히 바뀌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학교 교육에서 평생학습으로, 교육자 중심의 수동적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 학습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임.

- ▶ 특히, 우리나라 인구 추세를 보면, 2000년 고령화사회¹⁾에 진입한지 17년만인 2017년 고령사회²⁾에 진입하는 등 초고령사회³⁾로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고 평생직장의 개념 역시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에 따른 평생교육 확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 안 제2조에는 신설되는 재단법인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구광역시 평생학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바꾸어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교육⁴⁾”을 “학습⁵⁾”으로 바꾼 것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변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짐.
- ▶ 안 제10조에서는 진흥원의 설립과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음.
- ▶ 안 제11조에서는 진흥원에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1)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
2) 고령사회(Aged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
3)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후기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4) 교육(教育) :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
5) 학습(學習) : 배워서 익힘.

그러나, 사업내용과 소요예산 등의 사업계획이나 수익사업의 승인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감독을 포함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참고 2).

- ▶ **안 제12조**에서는 관련 법령(「민법」 등)에 따른 진흥원 정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재단법인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감시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진흥원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 조성 방안 및 평생학습 관련 사무의 진흥원 위탁과 자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 ▶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법인 청사 등의 입지를 위해 공유재산의 대부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재단법인 설립 후 대구시와의 업무 협조와 조직 안정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진흥원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적절한 수준의 인력과 기간으로 하여야 할 것임.

- ▶ 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재단법인의 지도·감독, 성과 계약, 경영실적평가 등의 적용 규정을 명시하고, 기타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진흥원 설립 근거 및 장·단점은

- ▶ 현재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시·도에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를 포함한 8개 지자체는 연구원이나 대학교 등의 부설기관에 평생교육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등 9개 지자체는 재단법인으로 설립·운영하고 있음.(참고 1)

- ▶ 대구시는 2009년 5월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한 후 2012년 5월 대구경북연구원을 대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진흥원의 조직으로는 진흥원의 원장은 대구경북연구원장이 겸직하고, 센터장 등 총 6명의 팀장 및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6) 평생교육법

-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진흥원의 법인 설립과 지정 운영의 장·단점으로는,**

진흥원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통해 평생교육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향상된 추진 역량을 바탕으로 평생교육 전반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과 평생교육 연구·진흥사업의 확장 및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신설 조직으로서 사업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 증가 부담의 문제가 있음.

지정 운영의 경우에는 지정받은 기관의 주된 업무나 기능에 평생교육 업무가 종속되어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지정받은 기관의 인력과 조직, 축적된 자료와 연구 역량 등 유·무형 자원의 활용이 용이함에 따라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의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행정 기능의 양적·질적 성장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공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은 행정기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체제로 인식되어 왔음.

▶ **다만,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은 대구시의 출연금 등 재원으로 추진되는 만큼, 재단법인 설립 후 연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진흥원의 재단법인 설립 추진과정에 있어 공공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담보하면서 평생교육 진흥과 확산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참고 1**전국 평생교육진흥원 현황**

구 분	운영기관	개원일	방 식	비 고	
법인 설립	서울	서울평생교육진흥원	2015. 3	법인(단독)	
	부산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17. 1	법인(융합)	
	인천	인천인재육성재단	2013. 5	법인(융합)	
	광주	광주평생교육진흥원	2015. 2	법인(단독)	
	대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2011. 6	법인(단독)	
	세종	세종인재육성재단	2018. 2	법인(융합)	
	경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1. 12	법인(단독)	
	충남	충남평생교육진흥원	2016. 5	법인(단독)	
	제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17. 12	법인(융합)	
위탁 운영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2014. 2	지정위탁	
	울산	울산인재육성재단	2012. 7	지정위탁	
	강원	강원발전연구원	2014. 3	지정위탁	
	충북	충북발전연구원	2011. 4	지정위탁	
	전북	전북연구원	2016. 8	지정위탁	
	전남	전남인재육성재단	2014. 3	지정위탁	
	경북	경북도립대학교	2013. 6	지정위탁	
	경남	경남발전연구원	2015. 1	지정위탁	

참고 2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관련 타 시도 조례 현황

연번	기관명 (개원일)	설립근거	사업계획 수립·시행·보고 및 지도·감독
1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15. 3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p>제2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진흥원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p>제31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원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진흥원이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⑤ 시장은 진흥원 및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연번	기관명 (개원일)	설립근거	사업계획 수립·시행·보고 및 지도·감독
2	부산 인재평생교육 진흥원 (17. 1월)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p>제22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함께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3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3	인천 인재육성재단 (13. 5월)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p>제18조(조직 및 시설)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22조(사업계획서 승인 등) ①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p> <p>② 진흥원장은 매년 8월말까지 익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 진흥원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되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p>

연번	기관명 (개원일)	설립근거	사업계획 수립·시행·보고 및 지도·감독
4	광주 평생교육진흥원 (15. 2월)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p>제17조(사업계획서 승인 등) ①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p> <p>② 진흥원장은 매년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개시년도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p> <p>③ 진흥원장은 매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그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경영 상태를 보고하게 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진흥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5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11. 6월)	대전평생교육진 흥원 조례	<p>제8조(감독) ①시장은 진흥원의 업무를 감독한다.</p> <p>②시장은 진흥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6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11. 12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p>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진흥원은 매년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2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경영상태를 보고하게 하거나 도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p>

연번	기관명 (개원일)	설립근거	사업계획 수립·시행·보고 및 지도·감독
7	충남 평생교육진흥원 (16. 5월)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p>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진흥원은 매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진흥원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p>제27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도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8	제주 평생교육 장학진흥원 (17. 12월)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p>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p> <p>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p>

연번	기관명 (개원일)	설립근거	사업계획 수립·시행·보고 및 지도·감독
9	세종 인재육성재단 (18. 2월)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연간 사업 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연금 지급이 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2. 사업계획서의 사업 타당성 등 <p>④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진흥원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p>②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업무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p>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법인 설립 시 출연금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 기본재산 2억, 연간 운영예산 19억에서 21억원 예상됨
○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사업계획과 예산안 제출·변경 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규정이 있던데 우리시 조례안에는 그러한 사항이 언급이 되어있지 않은데?	○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당초 대구경북연구원으로 운영되던 것과 비교하여 법인 설립 시 운영되는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 현재 원장 포함 7명에서 법인 설립 시 15명으로 운영될 예정임

5. 토론요지

-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에 따라 평생학습진흥원 재단 설립목적에 맞는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안 제14조의2 및 안 제14조의 3을 신설하는 것으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함.

6. 수정안 요지

- 안 제14조의2(사업계획 등의 제출) 및 안 제14조의 3(보고 및 검사)을 각각 신설함.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첨부서류

- 위원회 수정안 : [붙임1]

[붙임1] 위원회 수정안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의2 및 안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함께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출 안	수 정 안
<p><u><신 설></u></p>	<p><u>제14조의2(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u>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u>②</u>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함께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u>제14조의3(보고 및 검사) ①</u>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u>②</u>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u>③</u>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을 “대구광역시 평생학습진흥원”으로 하고,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을 “설립한”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평생교육진흥원”을 “대구광역시 평생학습진흥원”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대구광역시 평생학습진흥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평생학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업무)”를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현행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를”을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현행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해당 지역”을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현행의 제목 외의 부분)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현행의 제목 외의 부분)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현행의 제목 외의 부분)제9호(현행의 제10호) 중 “시장과 교육감”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진흥원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진흥원은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한 내용을 대구광역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원조성 등)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정부의 지원금
3. 대학,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 밖에 진흥원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함께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3(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 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관련 법규의 적용)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성과계약, 경영실적평가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